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33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교보증권㈜
임직원	5명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71조에 따른 핵심(요약)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및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이하 '금융실명법')」 제3조 등에 따른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1,000백만원, 기관주의 및 임직원에 대한 감봉 3월 등 부과

○ **(수정심의)** 자본시장법에 따른 핵심(요약)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건수 및 위반동기(상→중)를 조정함에 따라 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재산정(1,000백만원→260백만원)하고,

-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분제재 양정을 '주의'로 감경

3. 조치이유

가. 핵심(요약)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

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위험, 상품특성,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, 해당상품의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(요약)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,

○ 교보증권㈜은 2021.5.10.~2023.5.31. 기간 중 총 853개의 CFD(Contract For Difference, 차액결제계약) 계좌를 개설하면서 개인인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할 핵심(요약)설명서를 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, 이에 개인인 투자자에 핵심(요약)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비대면 CFD 계좌 관련 실명확인 의무 위반

□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증표·서류 등으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(이하 '실명확인')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, 예외적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(근거계좌)를 근거로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근거계좌 외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제한됨에도,

○ 2018.4.26. 교보증권 마케팅추진부 등은 비대면 CFD 계좌개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실명확인된 종합계좌(근거계좌)에 근거하여 실명확인 없이 연결계좌를 개설할 때 동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 외의 여타 계좌로 실명확인 없이 이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·운영하였으며

○ 2018.8.29.~2023.5.25. 기간 중 비대면 CFD 계좌 중 355개 계좌에서 근거계좌가 아닌 여타 계좌로 약 190.2억원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(조치사유 가.)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, 제449조 제1항 제2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나목, 제390조 [별표 22]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의2 제3항,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, 제3항 [별표 3]

(조치사유 나.) 「금융실명법」 제3조 제1항, 제5조의2 제1항, 「금융실명법 시행령」 제4조의2 제1항,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17조 제1항